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72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남인순・이기헌・허성무

염태영 · 이병진 · 김 윤

서영교 • 이재강 • 윤종군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 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담배만큼이나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법률 제 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 또는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을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u> 을	1연초(煙草) 또는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	<u>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u>
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	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
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
것을 말한다.	
	<u>.</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	
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u> 과 담배	<u>연초 또는 니코틴</u> -
는 몰수한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